

1.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2018학년도 전문대학 보건의료계열 정원 확대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
- 2) 조직도 변경에 따른 학칙 개정

나. 주요내용

- 1) 방사선과 입학정원 증원 및 미용피부테라피과 감원
- 2) 특별사업기구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조직 변경(신규 생생이 아닌 소속부서 이동)

다. 주요도의과제 : 없음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 해당 없음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원광보건대학교 학칙 개정(안)

현 행						개 정 (안)							
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						제5조(설치학과 및 입학정원) (현행과 같음)							
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 (학과명)	입 학 정 원			수업 연한	대계열분류	학부	모집단위 (학과명)	입 학 정 원			수업 연한
			주	야	계					주	야	계	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유아교육과	96		96	3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유아교육과	96		96	3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100	27	127	2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사회복지과	100	27	127	2
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아동보육과	30		30	2	인문사회	보건복지학부	아동보육과	30		30	2
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호텔관광과	70		70	2	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호텔관광과	70		70	2
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항공서비스과	30		30	2	인문사회	호텔관광외식학부	항공서비스과	30		30	2
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	자연과학	간호학부	간호학과	140		140	4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임상병리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물리치료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0		8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방사선과	86		86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기공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치위생과	120		12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의무행정과	80		80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안경광학과	79		79	3
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식품영양과	60		60	2	자연과학	보건의료학부	식품영양과	60		60	2
자연과학	호텔관광외식학부	외식조리과	90		90	2	자연과학	호텔관광외식학부	외식조리과	90		90	2
자연과학	한류예술학부	미용피부테라피과	95		95	2	자연과학	한류예술학부	미용피부테라피과	86		86	2
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	자연과학	군사학부	의무부사관과	70		70	2
공 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	공 학	군사학부	전투부사관과	40		40	2
예·체능	한류예술학부	주얼리디자인과	30		30	2	예·체능	한류예술학부	주얼리디자인과	30		30	2
			1,490	27	1,517					1,487	27	1,514	

<p>제7조(조직) ① (생략)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>13. 특별사업기구에는 <u>LINC사업단</u>, <u>WCC사업단</u>, <u>특성화사업단</u>, <u>세계로프로젝트사업단</u>, <u>창업교육단</u>, <u>NCS교육단</u> 등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	<p>제7조(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----- <u>LINC+사업단</u>, ----- ----, <u>K-MOVE사업단</u>,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우리대학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를 둔다.</p> <p>1. 교무처에는 <u>교수학습지원센터</u>를 둔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신설></p> <p>4. 국제개발원에는 <u>글로벌 교육센터</u>, <u>해외출장소</u>, <u>한국어학당</u>, <u>원어민사업단</u>을 둔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산학협력단에는 <u>귀금속보석연구센터</u>, <u>창업보육센터</u>, <u>산단캠퍼스지원단</u>, <u>패션주얼리커플링사업단</u>, <u>다문화가족교육상담센터</u>, <u>보건과학연구소</u>, <u>간호과학연구소</u>, <u>문화관광연구소</u>를 둔다.</p> <p>7. <u>NCS교육단</u>에는 <u>NCS인증센터</u>를 둔다.</p> <p>8. <u>LINC사업단</u>에는 <u>현장실습지원센터</u>, <u>창업교육센터</u>를 둔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80조(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----- <u>교수학습지원센터</u>, <u>NCS 인증센터</u>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국제교류처</u>에는 <u>한국어학당</u>, <u>원어민사업단</u>, <u>다문화교육센터</u>를 둔다.</p> <p>4. ----- <u>세종학당을</u> 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<u>보건과학연구소</u>, <u>간호과학연구소</u>, <u>문화관광연구소</u>, <u>학교기업사업단</u>, <u>현장실습지원센터</u>를 ---.</p> <p>7. <u>취창업지원처</u>에는 <u>창업교육센터</u>를 둔다.</p> <p>8. <삭제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	<p>부칙</p> <p>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